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9

발의연월일: 2024. 7. 4.

발 의 자: 엄태영·유상범·박덕흠

서천호 • 권성동 • 김장겸

강명구 · 이종배 · 김 건

박충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 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과 혁신도시 외의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그 정당성 입증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요구되어 혁신도시 외의 지역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9조제1항 단서 삭제 등). 법률 제 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혁신도시로"를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단서"를 "제1항"으로, "개별이전하는"을 "이전하는"으로, "개별이전을"을 "이전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	2
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	
으로 이전하는 <u>공공기관(제29</u>	<u>공공기관</u>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	
<u>함한다)</u>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이전공공기관은 <u>혁신도시로</u>	① <u>혁신도시</u>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는 그 외 지역으로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	<u><단서</u>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	<u>삭제></u>
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	
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	
전하는 지역의 시 ·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	

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ر کر	(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혁신도 시 외로 개별이전하는 공공기 관의 장은 개별이전을 위한 업 무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 는 사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② <u>제1항</u>
<u>이전하는</u>
이전을
③ (현행과 같음)